

수의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한민국 수의사의 존재이유를 묻는다!

오용관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



2006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홍하일 위원장(중앙), 권태억 부위원장(오른쪽), 오용관 정책국장(왼쪽)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는 2006년 5월 12일, 올해 새롭게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손정민 등 25명의 수의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가진료’라는 명목으로 항생제·마취제·생물학제제 등 ‘주의동물약품’까지 아무나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

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일 먹고 있는 축수산식품에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항생제 내성율의 증가, 마취제의 범죄이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의사는 동물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해 안전한 축수산식품을 공급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6년의 대학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수의사면허를 취득한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 질병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가진료’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국내에서 사용된 동물용항생제 1,500톤중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된 것은 6%(90톤)에 불과하다. 또한, 축산물 1톤 생산에 911g의 항생제가 투여되며 이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는 나라의 30배(덴마크 43g, 스웨덴 31g)나 오남용되고 있다.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방치하게 하는 “수의사법 제10조,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6년 4월 19일 오후 5시 삼성동 무역센터의 아셈빌딩에 소재한 법무법인 '화우' 사무실에서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오용관 정책국장, 홍하일 위원장,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할 이경환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수의사들의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직업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 행사 범위가 예측가능 해야 한다.

그러나 위 두 조항은 수의사들의 진료 기회가 사육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게 함으로써 수의사 면허제도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증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수의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

수의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투쟁은 수의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행 수의사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부당성을 사회 전반에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 법과 제도속에 올바르게 수의권을 자리매김 하기 위한 수의권 확립 투쟁의 한 방법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사회 전반에 현행 수의사법상 주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조제권)이 없는 자가진료허용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고 그를 바탕으로 주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의 처방 조제권의 법제화 또는 수의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최소화 하는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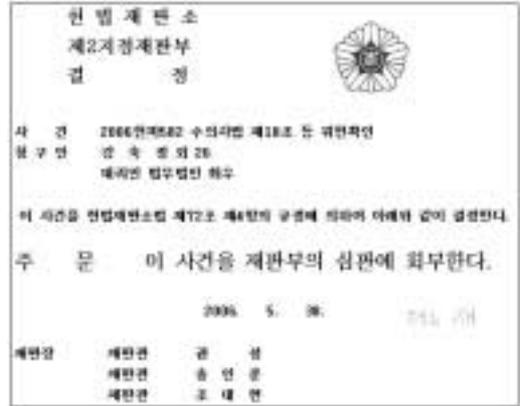
주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없는 자가진료 조항으로 인해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직업적 권리가 심각하게 부정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의사가 그 사회적 직업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안전한 축수산물의 생산, 공중보건과 방역상의 위험요소를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바로잡는 일이다.

수의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의

- ① 헌법소원청구소송 제기를 통해 주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수의사의 처방조제권) 없이 자가진료를 허

용한 수의사법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사회 일반에 널리 알릴 수 있다. 수의사법의 문제가 단순히 수의사와 동물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과 인류보편의 가치인 생명존중의 정신과 관계 있는 문제라는 점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헌법소원청구소송을 통해 당국 및 이해관계집단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다. 주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없는 자가진료허용 조항에 대한 우리 수의계의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이해관계집단들도 원론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우리 수의계가 사회 의제화를 하여야 향후 법률과 제도, 그리고 수의정책입안에 우리 수의사의 주장(주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의 처방조제권)이 반영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다.
- ③ 승소 시에는 수의권 정립의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설혹 승소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가진료허용 조항이 가지는 문제점을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알림으로써 보완정책 및 제도의 현실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법제화 및 정책개선이 담보될 수 있다.



2006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건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수의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현황과 진행 일정

이번에 제기된 수의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5월 30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의 '사전 심사'를 통과하고, 5월30일 헌법재판관 권성, 송인준, 조대현 3인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의해 '2006헌마582'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결정문 원문참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의해 수의사법 관계 기관(농림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에 의견제출이 요청되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건수'는 이해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을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자료를 제출하여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된다. 국건수는 '수의사법의 법리적 검토 용역', '자가진료 허용으로 인한 동물복지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 '자가진료 허용이 수의사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용역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법리공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예상 소요기간은 현재 진행중인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한 여론 조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되고 있다.

심리과정을 법적인 로비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과정을 통해 청구인을 대신하여 정부에게 답변 및 법률안 개정을 법적으로 종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한 이유가 없다면 즉, 주약품의 수의사 처방 조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헌법소원은 기각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제50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 중
2006년 2월 14일자 수의사면허 취득자 323명

헌법소원 대표 청구인 명단

강숙정 권경래 김세운 김수정 김영민 김재승 김혜권 박서정 박성민 박혜서
손정민 신대수 오인경 이경미 이범석 이세라 이예은 이용진 이하나 임인숙
장서희 조민행 조은효 조현래 주영신 최덕우 최소영

헌법소원 청구 보조인 명단(기존 수의사면허 소지자 44명)

계명준 김구철 김동후 김봉만 김수진 김영삼 김지형 김진범 김현기 문성호
민원규 박상표 박성은 박영춘 박진석 백필수 서동진 성충현 송보섭 송은주
신혜원 양문석 오용관 윤재원 이기원 이문영 이상민 이용호 이항률 장병길
장오갑 전봉근 정광업 정은민 정지남 조명래 조은석 주민석 지정민 차현만
최석렬 최춘기 홍민기 홍하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헌법소원 관련' 소식은 홈페이지 www.vetnews.or.kr에 있습니다.

